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향상을 도모 하고자
- 서구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 10월 19일 시장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블록 및 도로를 경계로 조정
- 조정규모
 - 풍암동 일부지역을 매월동에 편입 : 법정동 및 지번 변경
(풍암동 699-6외 23필지 $\Rightarrow$ 52,108m²)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공사 풍암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의 조성완료예정일이 도래함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는 등 동일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게 되어 건축물의 신축, 우편물배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풍암동 699-6 외 23필지(52,108m²)를 유통업무 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조정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은 이미 서구의회 제87회 임시회에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변경계획의 건요구안을 제출하여 서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동의 구역변경에 필요한 사전절차(광주광역시장의 승인)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서구의회 제87회 임시회의 의결과 구역변경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경유 그리고 법정동간 경계변경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아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요구안 29쪽의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이미 1999년 8월 31일자로 그 내용이 개정되어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區域變更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법조문의 인용 제출시에는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